2025. 1월 실시

대한체육회장선거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주요 선거운동 및 제한·금지사항 안내



T 대한체육회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개요]

● 선거일: 2025. 1. 14.(화)

▶ 후보자 등록 : 2024. 12. 24.(화) ~ 12. 25.(수)

◊ 선거운동기간: 2024. 12. 26.(목) ~ 2025. 1. 13.(월)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전일까지 19일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및 선거사무원등(선거사무장 1인, 선거사무원 4인)

▶ 선거운동 정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선거사무원등 ·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 전화[통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정보통신망[체육회 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 전화[통화,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 선거공보, 윗옷 및 어깨띠, 명함 · 정보통신망[체육회 개설 홈페이지를 포함한 · 선거운영위원회가 주최하는 1회 이상의 후보자 모든 형태의 정보통신망(전자우편, SNS 등)] 정책토론회 참석(단, 후보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2회 이상 정책토론회 실시 가능) · 윗옷 및 어깨띠, 명함 · 선거운영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 자 대상 토론회 참석(다만,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 의하는 경우에 한함) ·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및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와 '선거사무원등'에 한하여 법과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 금지

1 주체별 제한내용(법 §35)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체	제한기간	제한내용	비고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후보자'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	기부행위 제한기간 (*24. 7. 31. ~ 선거일)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대한체육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선거인의 가족의 범위 -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5 _①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24. 7. 31. ~ 선거일)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대한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35 ②
		대한체육회장선거에 관하여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5 ₃
		위 규정된 행위(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는 행위	§35 ₄

2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법 §33)

▶ 직무상의 행위 : 법 §33①1

▶ 의례적 행위 : 법 §33①2

▶ 구호·자선적 행위 : 법 §33①3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위탁선거법상 기타 주요 제한·금지 행위

구 분	금지·제한 사항	비고
선거인 매수 및 이해유도행위 상시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대한체육회장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대한체육회에 가입 신청을 한 자)를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위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 위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58
허위사실공표 금지	(당선목적)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61
후보자 등 비방 금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라이스 그런 이하의 지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선거일 후 답례금지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이 선거일 후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선거인에게 축하·위로나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금전·물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선거인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체육회의 임·직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31

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개요 및 선거운동

[개요]

● 선거일: 2025, 1, 16.(목)

▶ 후보자 등록 : 2025. 1. 2.(목) ~ 3.(금)

▶ 선거운동기간 : 2025. 1. 4.(토) ~ 15.(수)

※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 선거일 전일까지 12일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

▶ 선거운동 가능자 : 후보자, 선거사무원 1인, 활동보조인 1인
 ※ 장애인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1인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음.

▶ 선거운동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통상적인 업무행위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 선거공보 · 전화[통화, 문자(음성·사진·화상·동영상 등 포함)] · 전화[통화, 문자(음성·사진·화상·동영상 등 포함)] · 정보통신망[장애인체육회 개설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카톡) 등)] · 정보통신망[장애인체육회 개설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카톡) 등)] · 명함 · 명함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및「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는 선거운동기간과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 주체도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중이라도 '후보자',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에 한하여 법과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여야 함
-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선거운동 관련 제한·금지 행위 3~4페이지 참조

Ш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포상금 및 과태료 제도 안내

1. 신고 포상금 지급

- 대한(장애인)체육회장선거 관련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 ☞ 포상금 지급사례

입후보예정자가 본인의 금전살포 사실을 알게된 신고자에게 사건은폐 및 자신의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을 제공함.

◈ 신고자 포상금 1억원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인 7명의 자택 등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의 현금을 제공함.

◈ 신고자 포상금 5천만원

2. 신고자 신원보호

- ▶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
- ▶ 포상금 지급 시 익명 처리,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포상금 지급

3.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 ▶ 금전·물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자는 최고 3천만원 과태료 부과
 - ※ 제공받은 금전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자는 형사 처벌)
 - ☞ 과태료 부과사례

입후보예정자로부터 배 5상자(7.5kg, 1상자당 20,000원 상당)를 받은 선거인의 배우자 ▶ 과태료 500만원

후보자로부터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인 5명

▶ 과태료 총 500만원(1명당 100만원)

위반행위 신고 070-5147-2425, 2428

※ 신고 시에는 가급적 증거자료(통화녹음, 음성녹음, 동영상 촬영물, 카톡·문자 등)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